

전산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전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학교 IT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, 심의한다.

1. 대학 정보화 중·장기 추진계획 수립
2. 학사(행정 등 모든)업무 전산화 개발 및 정보처리
3. 전산정보 시스템(주전산기, 정보통신망 등)의 구축 및 운영
4. 주요 전산기기의 도입, 유지보수 및 폐기
5. 정보보안정책 심의와 학내 정보보안의 총 관장
6. 정보보호정책 및 총괄 계획 심의
7. 정보보안사고 처리의 책임을 심의·결정
8. 정보보안교육 및 정보보안준수 사항 감사
9. 기타 전산업무 및 정보보안 관련 제반업무의 총괄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, 총무처장, 대학원장, 도서관장, 정보화담당관 및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전산주임이 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7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.

제8조 (주관부서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전산과에서 담당한다.

제9조 (협조요구권) ① 위원회는 필요시 각 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.

1. 관련 업무 현황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
2.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견 개진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) 위원 및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전산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